

의안번호	제 11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59 회)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4 월 일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 번호	110
----------	-----

제출연월일 : 2007년 4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1980년 80병상으로 건립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노후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대두로 현대화 사업 필요성제기
-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 기업도시 등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신축사업 추진결과 '07년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을 국비 50%, 도비50%의 재원 부담률에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 도 액 : 57,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의무부담액 : 28,550백만원(한도액의 50%)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충청북도)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한 도 액	국 비(50%)	도 비(50%)
	57,100	28,550	28,550

3.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

※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 지급금 구성·산정 1부
- 관련규정 사본 1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소재지 : 충주시 안림동 산 45-1번지
- 사업규모 : 부지 99,000m²(약 30,000평)
 - 도유지 90,667m²(27,426평), 개인 소유 8,333m²(2,520평, 5필지)
- 한도액 : 571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07년~2010년(4년)
- 건축면적 : 23,100m²(지하 1층, 지상 4층), 300병상
- 사업방법 : BTL 사업

2. 추진상황

- 충주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03. 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원 현대화 타당성 용역 : '05. 12
-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06. 5. 3
- 기획예산처 BTL사업 국무회의 의결 확정 : '06. 9
- 국회 보고 및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보건복지부) : '06. 12
-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에 사업 확정 통보 : '07. 1. 22

3. 향후추진계획

- 부지매입 : '07. 8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7. 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07. 12 ~ '08. 6
- 시설공사 착공 : '08. 12

□ 지급금 구성 · 산정

1. 지급금 구성

- 지급금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 - 부속사업순이익
 - 시설임대료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균분하여 지급함
 - 운영비 : 시설운영기간(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 ※ 사업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서 산정
 - 부속사업 :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시설을 활용,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예: 구내매점 등)
 - ※ 사업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서 산정

2. 지급금 산정

- 지급기간 : 준공 후 20년(2011~2030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계	109,560	54,780	54,780	수익률 6%가정
시설임대료(년)	5,478	2,739	2,739	

- ※ 시설임대료(국·도비 각 50%), 운영비(도비 100%)
- ※ 지급금은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 선택 지급 가능

□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

-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적정시기(대상사업지정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필요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4. 3. 16. 1999. 8. 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